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9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김병주 · 윤후덕 · 이성운
황명선 · 이상식 · 김우영
송재봉 · 박 정 · 소병훈
허 영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차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정의하고,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과속 운전,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안전모 미착용, 다인 탑승 등 안전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행자·운전자 간 충돌 사고와 각종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여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확대되면서 운전자격 확인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무면허·미성년자 운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도로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을 현행 이용 실태에 맞게 강화하고, 속도관리·운전자격 확인·대여사업자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하고, 도로 구간·구역별로 추가적인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동시에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기반을 구성하여 미성년자·무면허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를 추가하고 있음.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17조의2, 제55조의2, 제157조제3호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제11호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①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

④ 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확인의 절차·방법,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56조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한다.

제15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5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제160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11.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
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
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2조제19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u>25킬로미터</u>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 ----- ----- <u>20킬로미터</u> ----- ----- ----- ----- -----. 20. ~ 34.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u> ① <u>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② <u>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u>

<신 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의무) ①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50조제10항에 따른 승차정

	<u>원을 초과한 동승자 탑승 금지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u> ④ <u>시·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확인의 절차·방법,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u>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	제148조의2(벌칙) ① ----- ----- ----- ----- ----- ----- ----- ----- ----- -----

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u>자전거등을</u> 운전한 사람	11. ----- ----- <u>자전거를</u> ----- -----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을</u>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 ----- ----- ----- ----- <u>자전거를</u> ----- ----- -----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u>자전거등을</u>	12의2. ----- ----- ----- ----- <u>자전거를</u> -----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생략)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13. (현행과 같음)

제157조(벌칙)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5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11. 제5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

② ~ ④ (생략)	<u>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u> ② ~ ④ (현행과 같음)
------------	---